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심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혹은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안내 ※

1. 법적근거

-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17.3.1.] 제19조(자료의 정정)
- 2)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시행 2016.11.29.]

2. 구비서류

- 1)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3)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예: 가족관계·본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 사본

구분	발급대상자		
	성인 (기준: 민법 제4조)	미성년자일 경우	
확인 사항	1) 위임장	법정대리인(부모) 방문	1) 가족관계 입증 서류 2)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 (부·모·형제자매) 방문 시에도 필요	제3자 방문	1) 위임장 2) 미성년자와 위임 하는 사람의 관계(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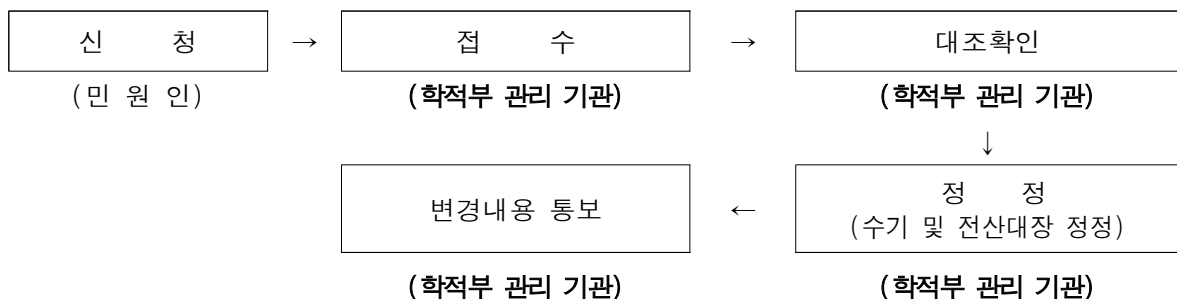
3. 신청방법

- 1) 정정대상 학적부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또는 기관)¹⁾ 방문
- 2) 우편민원신청: 우체국(우편민원) → 정정대상 학적부의 관리 학교(또는 기관)
- 3) 전국 시·도교육청,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등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에 해당되는 기관에서의 팩스민원 신청: 기관(예: 인근 초등학교) → 정정대상 학적부의 관리 학교(또는 기관)

4. 처리기간 : 학적부 보관 기관 사정에 따라 처리 시간이 상이함

5. 수 수 료 : 없음

6. 업무 흐름도(처리절차)



1) 폐교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en.go.kr>)-교육청안내-폐교및변경학교찾기 참고